

	<h2 style="margin: 0;">보도자료</h2>	<p style="margin: 0;">www.hklaw.co.kr 대표번호 : 3487-3000</p>
<p style="margin: 0;">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 0;">언론홍보 담당자 : 박진미 차장 담당변호사 : 김호철 변호사, 김희제 변호사 (T. 02-3458-0966, E. jmpark@hklaw.co.kr, hklaw.pr@hklaw.co.kr)</p>		

법무법인 한결, 고속도로공사로 인한 양식장 피해 사건 도로공사 상대로 승소 이끌어

- 동해고속도로 공사 토사로 인한 연안 양식장에 피해배상 책임 인정
- 해양전문기관의 과학적 분석모델 감정평가로 부유토사와 가리비·명게 등 수산물 집단폐사 인과관계 밝혀내
- 향후 부유토사로 인한 해상 및 육상 양식장의 피해배상에도 적용되기를 기대

법무법인 한결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동해고속도로 공사기간 중 발생한 대량의 토사로 인하여 인근 연안 양식장의 수산물이 집단 폐사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전부 패소한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재판장 여미숙)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자연력 제감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받은 점에서 판결 내용상으로는 전부 승소한 셈이다.

가리비와 우렁쉥이 양식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06년 주문진-속초간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 기간 중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흙탕물과 부유물이 바다에 유입되어 원고의 양식장 가리비 등이 폐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의 항소심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유) 한결의 김호철·김희제 변호사는 해양감정 전문연구기관의 과학적 분석모델을 활용한 감정 기법을 적용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원고 양식장의 참가리비와 멍게 폐사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피고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또는 수산업법 제82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원고의 가리비 및 멍게 폐사에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부유토사 등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고들이 공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바다로 유입·양식장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양식하던 가리비 등이 폐사하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의 일부인 4억 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개별 양식업자들은 이와 유사한 피해를 수없이 입어도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감정기관을 찾기 어렵고 고액의 감정료 부담과 배상받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적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법인은 이 판결을 통해, 향후 고속도로 공사시 발생한 토사로 인한 환경피해 배상에 좋은 선례가 되어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적절히 보상되기를 기대한다. <끝>

붙임 :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2나32296호)